

전주지방법원 2022. 9. 16 선고 2021가단686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섭, 이춘효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우아름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주로펌

담당변호사 최국신

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모악

담당변호사 박일지

변 론 종 결 2022. 8. 26.

판 결 선 고 2022. 9. 16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2/17 지분에 관하여 2020. 3. 6. 체결된 상속재산
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2/17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20. 9.
10. 접수 제144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원고는 늦어도 2019. 11.경부터 채무자 C에 대하여 18,000,000원(원금 기준)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(갑 제1호증). 채무자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 중 2/17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, 2020. 3. 6. 상속재산 분할 협의(이하 ‘이 사건 협의’라 한다)를 하여 위 지분은 피고에게 이전되었다(갑 제2호증).

이 사건 협의 당시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군산시 D아파트 E호를 소유하고 있었고(2022. 4. 21. 고창군 회신), 그 외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. 위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거래가액이 47,000,000원(2017. 6. 2.경 기준)인 반면, 채권최고액 36,000,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, 가압류등기에 의할 때 채무자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19,800,000원, F조합에 대하여 18,084,445원 상당의 채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.

따라서 원고의 채권까지 함께 고려하면, 위 아파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협의 당시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는 이미 부족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 그러므로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의 재무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/17 지분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피고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 부분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에 미달하는 부분에

한정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. 그러나 기여분,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피고가 주장·증명하여야 하는데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), 피고는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·증명을 하지 않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판사 허윤범